



스페인,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장윤미 연구원

요약

스페인은 3가구 중 1가구가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개체 수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식별률과 보험가입률은 낮은 상황임. 또한 스페인은 불법 동물거래의 주요 경유지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을 시행함. 이에 따라 반려견 소유주는 견종과 관계없이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함. 미준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스페인에서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가 예상됨

-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반려동물 보유국 중 하나로 3가구 중 1가구가 최소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식별되지 않는 반려동물 수가 많고 보험가입률은 낮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¹⁾
 - 유럽에서 스페인은 반려동물 시장규모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 순이며²⁾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약 1,300만 마리에 달함
 - 그러나 2020년 기준 스페인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반려견의 27.7% 정도만이 마이크로칩으로 식별 가능하며, 반려묘의 경우는 이 같은 수치가 4.3%에 불과했는데, 다수의 반려동물이 스페인 정부의 관리와 통제 밖에 있음
 - 팬데믹 이후 반려동물 수가 늘며 이들의 공중보건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스페인에서 반려견에 대한 펫보험 가입률은 개체 수 대비 3%에 불과하고 이는 영국(2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임³⁾
- 스페인은 또한 동물 불법거래의 주요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스페인과 유럽연합 내에서는 동물의 불법 거래를 막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⁴⁾
 - 스페인은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관계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으로 포획되는 동물이 프랑스, 벨기에, 동유럽 등으로 밀매되는 주요 입국지이자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음
 - 2022년 스페인으로 밀매된 보호대상지정 동물 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동물 불법거래의 증가 원인으로는 약소한 법의 처벌 수준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유럽연합은 2020년 반려동물 불법거래에 관한 결의안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유럽연합

1) 스페인 공식 관보(2023. 3. 29), "Ley 7/2023, de 28 de marzo,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el bienestar de los animales";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이하의 내용은 모두 동 내용을 인용함
 2)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spain-pet-secto>)
 3) Euroweeklynews(2023. 8. 6), "Mandatory dog insurance in Spain to take effect next month"
 4) Euronews(2023. 3. 31), "Low sentencing to blame for spike in protected animals trafficking in Spain, authorities says"
 5) 유럽의회(2020. 2. 12), "The illegal trade in companion animals in the EU"

전역에 걸쳐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의무등록 및 식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2023년 스페인에서는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⁶⁾(이하 ‘동물복지법’이라 함)’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에 따라 견주는 반려견 소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스페인에서는 각 주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여러 이질적인 규범이 존재하지만 국가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안은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스페인 정부는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며 동물유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물복지법을 마련하였고 해당 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됨
-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오랜기간 집안에 방치할 수 없는 등 일정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

○ 또한, 동물복지법은 스페인에서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견주로 하여금 제3자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견주는 견종과 상관없이 반려견 수명 전 기간동안 제3자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반려견으로 제3자 혹은 동물 등에 발생가능한 신체적·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함
- 반려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연간 25~30유로 정도이며 맹견의 경우 50유로이고,⁷⁾ 보험이 그 외의 수의학적 진료나 전화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음

○ 동물복지법 미준수 시 벌금형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반려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동물복지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용되며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10,0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2023년 3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에 관한 제재사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⁸⁾이 통과되었으며, 반려동물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할 경우 최대 3년에 달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6) Ley 7/2023, de 28 de marzo,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el bienestar de los animales

7) Sur in english(2023. 9. 6), "Spain's new animal welfare law: how much will liability insurance for dogs cost and what are the fines for not having it?"

8) Ley Orgánica 3/2023 de 28 de marzo, de modificación del Código Penal en materia de maltrato animal